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48 발의연월일: 2020. 11. 19.

발 의 자:홍기원·이용선·강준현

맹성규 · 서삼석 · 오영환

한준호 · 김경협 · 소병훈

홍익표ㆍ허 영ㆍ김수흥

진성준 • 윤영덕 • 김승원

우워식 · 유재갑 · 정필모

이규민 · 이동주 · 천준호

김경만 • 이수진비 • 김영호

조오섭 · 황운하 · 이위욱

도종환 · 서영교 · 박영순

안민석 의원(3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로 추진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주한미군이 평택시에 상시 주둔하게 됨에 따라 제기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발전 을 위한 장기 비전을 담아낼 필요성이 있어 평택시 등의 주민들에 대 한 지원과 한미동맹,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 노력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과 주둔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로 4년 연장하고,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국제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공급되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회관등 공동이용시설을 주민공동체에 무상양여가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과 같이 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조성원 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 나. 이주단지에 설치한 마을회관 등의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소유권을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양여가 가능하 게 함(안 제33조의2 신설).
- 다. 현행법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유효기간인 2022년까지 완료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2026년까지로 연장함 (법률 제7271호 부칙 제2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의3(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①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는 국제화계획지구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공급하여야 한다.
 - ②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27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전 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 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 ③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공급절차·방법, 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주단지에 설치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

이용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무상 양여 받은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평택시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중 "2022년"을 "2026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24조의3(국제화계획지구 내 토
	지의 공급) ①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시행자는 국제화계획
	지구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
	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
	다)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
	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
	여야 한다.
	②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
	행자가 제27조에 따른 외국교
	육기관의 설립을 위하여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
	정용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
	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
	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
	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
	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공급절차·방법, 조성원가의 산
	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33조의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주단지에 설치된 마을 회관, 공동창고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 동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 다.

- ② 제1항에 따른 마을회 등 주 민공동체는 무상 양여 받은 토 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 기에 평택시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 거나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 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 하여야 한 다.
- 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 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 다.

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② (유효기간) 이 법은 <u>2022년</u> ② (유효기간) 이 법은 <u>2026년</u> 다.